〈第1回〉 環境保全에 關한 學術論文 佳作入選作

環境保全과 環境权의 法理

金 善 泰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政府가 지난 '79年 1月부터 새로 工業配置法을 制定하여 施行한 것은 이 法의 目的 그대로 特定地域에 대한 과도한 工業의 集中을 防止하여 國民福祉의 增進에 기여 하기 위한 것이었다.

政府는 이 法의 施行으로 漢江以北등을 工場移轉促進地域으로, 漢江以南의 京畿道 釜山 등을 制限한 것은 人口分散과 公害業種의 移轉때문이었다.

그런데 施行한지 3年도 되기 전에 規定措置를 완화한 것은 人口分散과 公害業種의 移轉措置가 완화되자 大氣汚染 水質汚染과 과밀한 人口集中現象이 더욱 加速할 處地에 있어 大都市에 사는 住民은 快適한 環境속에서 살 수 있게 되기에는 좀 더 어려운 現實로 되어 가고 있는 實情인 것 같다.

3. 外國의 環境汚染

外國의 경우에도 先進工業國일수록 公害의 問題는 심각한 것 같다.

日本의 경우 이타이 이타이病 事件이나 미나마타病 事件등이 有名하다.

美國의 경우는 Donora事件, 로스엔젤레스의 Smog등이 代表的인 例이다.

V. 公害被害와 그 救濟

1. 公害判例의 傾向

過去 우리나라는 外國에서 大氣汚染事件, 水質汚染事件이 있을 때에 강건너 불구경 같이 느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現實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도 産業의 發達로 大氣汚染, 水質汚染등 公害現象이 날로 增加하고 있다. 70年代를 접어들면서 公害訴訟事件이 나타나기 始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公害에 關한 公法的 規制가 不完全하기 때문에 公害問題는 私法的 救濟가 重大한 役害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現行法制下에 있어서의 救濟는 民法에 依한 一般 民事訴訟의 方法이다.

民事訴訟의 法律的인 理論構成은 大體로 民法第5章 不法行爲의 理論에 따르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인 것이다.

公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은 被害者와 加害者와의 因果關係를 立證하여야 하는데 加害行爲의 內容이 復雜하여 立證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訴訟問題가 야기 되었을 경우 加害者의 妨害나 非協調 때문에 立證이 어렵고, 加害者가 大體로 大企業에 비하여 被害者는 一般 庶民層인 經濟的 弱者라는 점으로 볼 때 現行 不法行爲의 理論이 지속될 경우 被害者는 救濟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公害事件에 있어서는 被害者의 立證責任을 다소 緩和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公害事件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證明은 因果關係의 相當한 程度의 蓋然性을 立證하게 된다면 그것으로서 充分하고 加害者가 反證을 提示하는 경우에 限하여 因果關係를 否定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判例는 事實上 推定說을 認定하고 判定한 것이다.

다음에 紹介한 大法院判例는 蓋然性理論을 많이 適用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公害判例

① 肥料會社에 對하여 工場의 有害가스 排出로

因한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大法院判例가 있다.

② 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의 證明程度에 관한 判決要旨는 原告 박이준은 韓國電力株式會社 蔚山發電所 西南方 200 m 地點에서 사과,배 등의 果樹園을 하고 있었는데 1967年부터 1971年 사이에 위 發電所의 發電過程에서 排出되는 아황산가스로 因하여 果樹의 樹勢가 나빠져 被害를 입었다고 損害賠償을 請求한데 대하여 原告의 所有 果樹의 樹勢가 惡化되어 結實을 不良低下로 原告가 損害를 입었다는 事實을 認定하였다.

이 判決은 蓋然性理論을 正面으로 認定하는 趣旨의 判決이다.

③ 工場廢水의 김養殖場에의 混入濃度가 安全基準을 超過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原審判斷에 審理未盡 理由不備 等의 違法이 있다고 判斷된 事例로 그 主文은 原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等法院으로 還送한다는 것이다.

以上의 判決은 一般不法行爲의 理論을 다소 修正하여 適用시키고 있는 것이다.

環境問題에 隨伴된 損害賠償請求는 現行民法의 不法行爲의 法理에 依하여 處理되고 있다.

公害라고 하는 被害者에게는 아무런 責任도 없는 不法行爲로 말미암아 받게된 損害는 다른 一般不法行爲의 경우보다 더 完全하게 救濟되어야 할 것이다. 救濟方法이 金錢賠償으로 되어 있는 것은 民法上 그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元來 일단 發生해 버린 被害는 예컨대 死亡의 경우처럼 돌이킬 수 없는 種類의 것도 現實的으로 너무나 많고 不得已 金錢으로 評價하여 賠償케 하는 것이지 生命과 金額과 같다는 생각은 아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公害+生命= 金錢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人命的이고 生命的인 次元에서 깊은 硏究와 法的인 救濟問題가 自然發生케 된다.

被害는 신속하게 救濟되어야 한다. 被害救濟가 늦으면 늦을수록 被害의 程度는 倍加된다. 即, 被害擴大의 沮止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被害救濟의 節次는 될수 있는대로 簡便하게 하여야 한다. 救濟節次의 複雜性은 救濟를 長期化할 뿐만 아니라 節次費用을 累積시켜 被害者의 救濟意慾을 減退시키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또 被害가 法的으로 保護할 만한 價値가 있는 以上은 完全하게 救濟되어야 한다.

따라서 環境汚染으로 因하여 人命被害를 주는 事件에 對하여는 特別環境裁判機構를 設置 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VI. 自然保護運動

1. 自然과 人間

自然과 人間과의 關係는 自然保護憲章에서 明言했듯이 自然은 人間을 비롯한 모든 生物體의 源泉으로써 오묘한 法則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秩序와 調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産業文明의 發達과 人口의 增加에 따른 空氣의 汚染, 물의 汚染, 綠地의 황폐등으로 自然의 衡平이 상실되어 生活環境이 惡化됨으로써 人間과 모든 生物의 生存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우리 國民 모두가 自然을 사랑하고 保護할 必要性이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原始的인 信仰은 自然崇拜에서 시작되었으며, 新羅時代의 花朗徒는 殺生有擇의 原理를 믿어 自然保護를 生活化하였다.

그리고 造林을 장려하고 濫伐을 禁止해 온 高麗와 朝鮮時代의 施政에서도 自然保護의 傳統은 이어져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近代化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西歐式 合理主義에 따른 自然觀, 즉 自然이란 人類文明의 객체로서 人間의 必要에 따라 얼마든지 征服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思考方式은 人口增加, 都市化의 進展, 經濟發展 등과 관련되어 우리 祖上들이 保護해 오던 自然을 무심하게 毁損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自然과 調和의 必要性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自然保護運動의 內容

우리 나라는 1977년부터 自然保護運動을 凡國民的으로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 運動의 趣旨는 지금까지의 機械論的 自然觀을 生態論的 自然觀으로 轉換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運動은 「하나밖에 없는 地球」式의 國際社會의 自然觀과 그 趣旨를 같이하고, 또한

UN이 채택한 「人間環境宣言」과도 方向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自然保護運動은 1977年 政府에 의하여 主導되기 전에는 일부 學校나 民間團體 등에서 부분적으로 推進되어 왔는데, 그 중 政府의 補助金과 外國機關의 支援을 받은 韓國自然保全協會의 活動이 가장 활발하였다.

이 運動이 凡國民的으로 전개된 것은 1977年 政府에 의한 것인데 政府는 自然保護의 槪念을 ① 自然淨化, ② 自然保全, ③ 環境保全의 3分野로 정하고 전 國民으로 하여금 自然保護思想을 生活化하게 하고 이 運動에 자진 參與할 수 있도록 각 職場에 自然保護會를 自律的으로 構成케 하였으며, 또한 전 國民이 自然保護思想을 生活化하도록 啓導하기 위하여 「自然保護憲章」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自然을 사랑하고 環境을 保全하는 일은 國家나 公共團體를 비롯한 모든 國民의 義務」라고 宣言하고 있다.

自然保護에는 法律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바, 自然을 保護하는 法律로서는 ① 環境保全法, ② 國土建設綜合計劃法, ③ 國土利用管理法, ④ 公園法, ⑤ 都市計劃法, ⑥ 砂防事業法, ⑦文化財保護法, ⑧ 汚物淸掃法, ⑨ 海洋汚染防止法, ⑩ 水道法, ⑪ 下水道法, ⑫ 農藥管理法, ⑬ 輕犯罪處罰에 관한 法律 등이 있다.

以上의 諸法令은 現在의 상황에서 볼 때 다소 不合理한 점도 없지 않은 감이 있으므로 이의 補完도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3. 自然保護運動의 問題點

(1) 自然保護를 위하여 土地利用이 規制되고 있는 地域으로서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綠地地域, 風致地區, 保全地區, 公園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私有地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 地域을 目的에 따라 維持管理하는데 必要한 費用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나 그 費用支出을 위한 政府의 投資順位가 낮고 또한 中央과 地方間의 分擔에 있어서도 地方의 過重負擔이 問題로 되어 있어서 自然保護를 위한 投資가 소홀히 되어가는 형편이다.

따라서 中央政府의 地方에 대한 財政的 補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自然保護費用負擔과 關聯하여 곤란한 問題는 規制地域內의 私有地所有者와의 關係에서 생기는 바, 즉 自然保護라는 社會的 要請에 따라 私權이 制限을 받아야 할 정도와 一般利用者 및 特殊利用者의 受益간의 不公平이라는 社會的 問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規制地域內의 私有地는 조속히 政府가 時勢에 따라 買入함으로써 制限과 受益間의 不公平을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現 社會를 産業社會라고 한다. 이 産業의 發達과 더불어 急速한 都市化 過程에서 오는 時代的 副産物로서 環境汚染이라고 하는 새로운 課題는 先進國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問題가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人類에게 賦課해 주고 있는 問題이다.

環境汚染인 大氣汚染과 水質汚染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汚染은 人命의 被害를 입히고 死亡에까지 이르게 하는 人類가 生存하는 社會問題는 물론 法律政策的 課題라고 思料된다.

「人間은 尊嚴과 權利에 充滿된 生活을 可能케 하는 環境속에서 充分한 生活條件을 享有할 基本的 權利를 지님과 同時에 그 環境은 앞으로의 世代를 위하여 保護하고 向上시킬 嚴肅한 責任을 진다」고 世界人間環境宣言은 이를 明示하고 있으며, 同 宣言에서는 人間의 尊嚴을 强調하고 있지만 環境汚染은 人間活動으로부터의 排出物이 自淨力을 超過할 때 일어나고 排出物의 量은 人口增加, 都市化, 經濟成長에 比例하는 것이기 때문에 人口의 增加가 根本的 問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人口中에서도 都市集中이라는 데서 決定的인 問題가 야기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自然保護運動을 汎國民的으로 전개한지도 數年이 지난 오늘 그 成果는 크다고 하겠다.

즉 自然淨化面에서는 많은 人員을 動員하여 啓蒙效果를 얻었으며 自然保全面에서도 적지 않은

배려가 있었고, 環境保全面에 있어서는 前述한 法律이 制定과 環境廳의 新設로 必要한 制度를 갖추었다.

요컨대 우리 國民들은 環境汚染이 단순한 産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源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生活속에서도 發生하는 까닭에 우리들 스스로가 被害者인 同時에 加害者이기도 하다는 自覺을 하여, 우리의 주변부터 淨化하여 가고 自然을 사랑하여 三千里 江山을 아름답고 快適한 곳으로 만들어 가며 環境保全을 위한 우리의 努力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後孫들에게 살기좋은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朴昌根 : 環境汚染槪論, 綠苑出版社, 1983.
環境廳 : 環境保全, 1982.
環境廳 :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意識調査報告, 1982.8.25 ~ 9.8.
-環境問題에 대한 國民意識은 높다-
具然昌 : 環境保全法, 三英社, 1981.
柳淳錫 : 環境保全法, 1978.
金哲洙 : 新憲法學槪論, 立法資料敎科憲法, 博英社, 1981.
朴奎祥外 3 人 : 人口論, 博英社, 1980.
盧隆熙譯 : 環境論, 未來産業社, 1979.
人口問題 : 高大出版部, 1980.
金道昶 : 行政法論(T), 青雲社, 1982.
韓相範 : 憲法學, 考試院, 1981.
吳錫洛 : 公害訴訟의 諸問題, 日新社, 1979.
崔德一 : 大氣汚染의 理論과 實際, 實用技術工學社, 1980.
論說集 : 法務部 第4輯, 1980.7.
朴昌根 : 自然이 죽기 전에, 飛鳥, 1980.
法과 環境 : 韓國法學敎授會編, 三英社.
성유운역 : 西紀 2,000 年의 地球, 학원서적, 1981.
朴昌根 : 이것이 公害다, 飛鳥, 1980.
現代社會와 倫理(Ⅰ,Ⅱ) : 螢雪出版社, 1981.
環境汚染과 그 對策을 爲한 세미나, 民韓黨, 1981.7.15.
盧隆熙 : 檢察, 1978, 第1輯.
權肅杓 : 檢察, 1978, 第1輯.
하나뿐인 地球, 月刊中央 11月號, 別冊附錄, 1972.
신복룡 옮김 : 公害에 대하여, 평민사, 1980.
金昇漢譯 : 人類의 危機, 三星文化文庫, 1980.
大法院 : 環境問題와 裁判, 法官硏究會, 資料Ⅰ (1978.11.15 ~ 11.17).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